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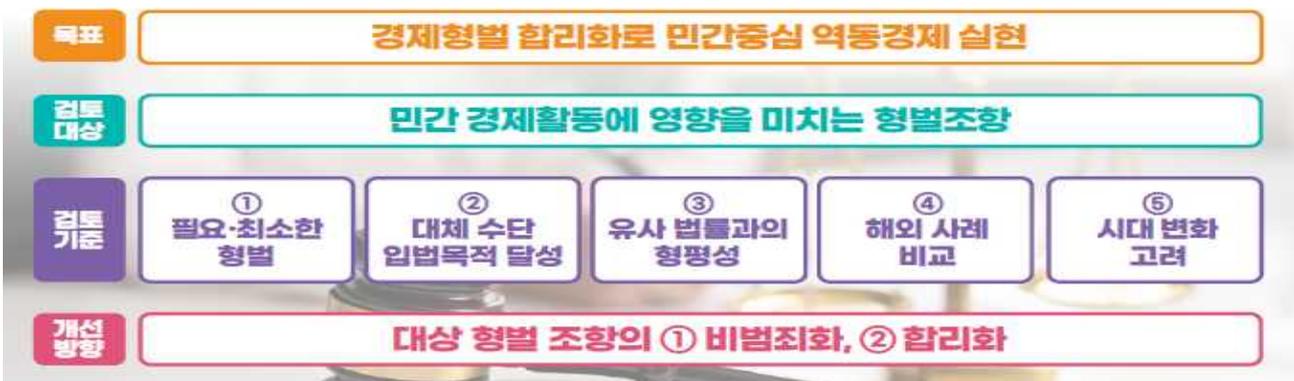
보도 일시	2022. 8. 26.(금) 규제혁신전략회의 종료시	배포 일시	2022. 8. 25.(목) 13:00
-------	---------------------------------	-------	-----------------------

담당 부서 <공동총괄>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구자영 (044-215-4630)
		담당자	서기관 김종현 (drkjh51@korea.kr) 사무관 류한솔 (feelrhs@korea.kr)
담당 부서 <공동총괄>	법무부 상사법무과	책임자	과 장 임철현 (02-2110-3167)
		담당자	검 사 정성두 (sdchung88@spp.go.kr)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다.
 -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서 경영계 등으로 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 * (참고) 한국경제연구원 자체조사에서 '99년 대비 '19년 형벌규정이 40% 이상 증가
- 이에 정부는 앞으로 ①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②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 단지 내 (주)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중이며,
 -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중이다.

*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

-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비범죄화(①형벌폐지 2개, ②과태료 전환 11개), 합리화(③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④형량조정 14개)

① (비범죄화: 형벌폐지)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국토부	
기존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선	형벌규정 삭제 →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

② (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 위반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공정위	
기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개선	형벌 규정을 1억원(동일인 등)/1천만원(임직원 등) 이하 과태료 (행정제재)로 전환

③ (합리화: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공정위	
기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내국 신용장 미개설 행위 및 계약이행·대금지급 보증 위반 시 벌금형
개선	형벌 부과에 앞서 행정제재(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④ (합리화: 형벌 형량조정)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하여 합리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산업부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미수범을 본법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선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미수와 기수간 형량 차등화

-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